

DO WHAT
LOVE
WHAT DO

2018수능 생활과 윤리 대비

판기생순 강상식

수원
분석



들어가며

EBS 수능특강 분석서를 제작하고 무료 강의를 진행한 이후에 수능완성 분석서 제작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원의 경우 연계 교재를 활용한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다보니 연계 교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큼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수능 특강 분석서와 수능 완성 분석서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6월 모의고사의 경우 수능 특강과의 연계성이 높았습니다. 기술 시민권, 정보 리터러시, 헤겔의 가족 윤리는 수능 특강과 연계되어 출제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9월 모의고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의 연계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다시 연계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BS연계 교재의 개념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출제 경향은 연계 교재의 문제와 선택지를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은 연계 교재의 개념 설명, 제시문의 용어를 활용하거나 변형하여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 방식은 연계교재를 활용하면서도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연계교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생원 연구소에서는 연계 교재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계교재 분석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석서는 적어도 3등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집필한 것입니다. 생원의 전체 단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독해력을 활용하여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단원은 분석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생원 만점과 1등급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해외 원조 등의 핵심 단원만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원을 깊이 있게 정리하고 단기간에 고득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분석서는 핵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낯선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 낯선 표현으로 서술된 선택지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고 EBS연계 교재의 내용과 표현이 변형되어 출제될 때 착각이나 실수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환경 윤리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인간은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② 쟁점 사항 : 각 사상가가 주장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과 고려의 방식
- ③ 주의 사항 :
 - 1) 도덕적 고려 대상은 인정하더라도 고려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
 - 2) 인간 중심주의의 목적론과 기계론은 서로 다른 사상가의 자연관
 - 3)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패스모어와 요나스 관점 차이
 - 4) 도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동물의 보호는 도덕적 실천과제

핵심 사상가

생명중심주의 : 테일러

◎ 기본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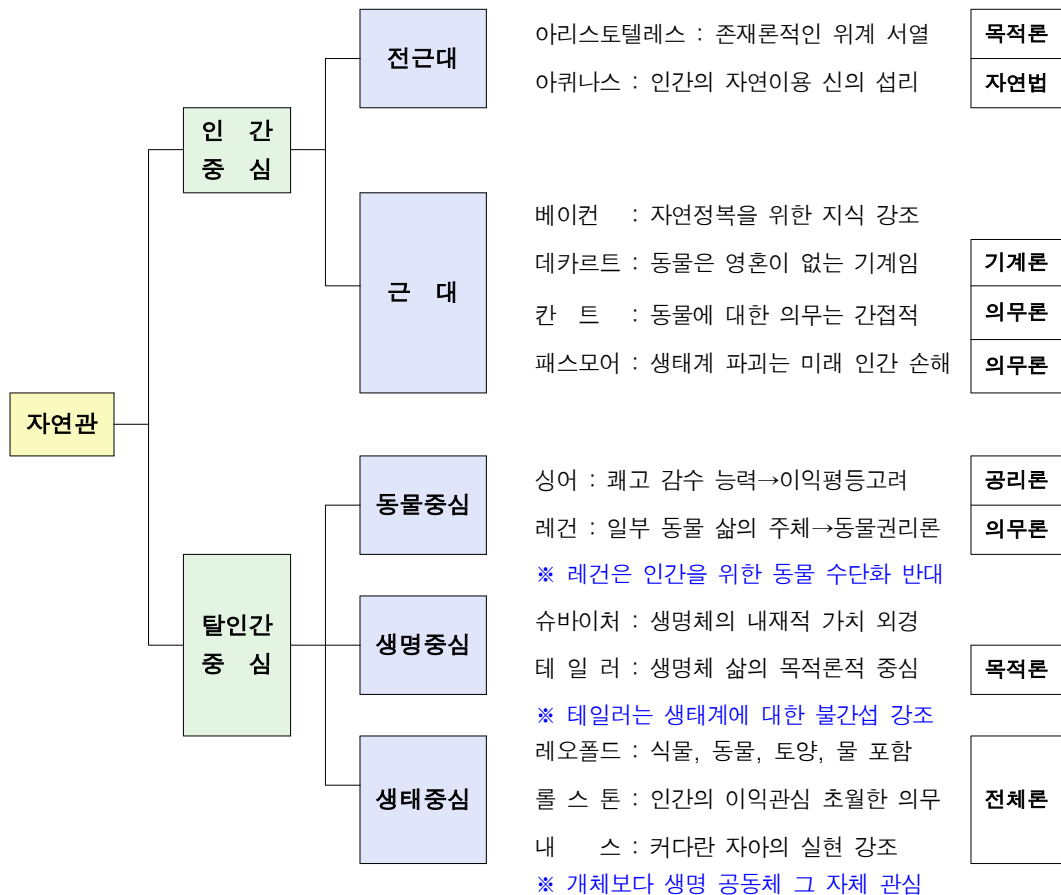
-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 지구의 자연적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네트워크(연계망)이다.
-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인간은 본질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악행 금지의 의무 :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함.
- 불간섭의 의무 :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함.
- 성실의 의무 :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야생 동물을 사냥, 낚시 하거나 밋을 놓는 등의 기만 행위를 금지해야 함.
- 보상의 의무 :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

2. 환경 윤리의 핵심적인 대립구도

공통전제 :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의 주체



주의사항 : 레건은 인간을 위한 동물의 수단화 비판, 테일러는 생태계 불간섭 의무 인정

2018 학년도

학평 · 모평에서 출제된 고난도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레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동물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가?	○
싱어, 레건	개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
테일러	인간에게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는가?	○
테일러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	X
요나스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X

3. 선택지로 변형될 수 있는 읽기 자료

베이컨 『신기관』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며 분석의 대상 (O)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얻은 만큼 (O)
크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중략)…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자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O)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완성 59P)

데카르트 『방법서설』

많은 동물들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보여 주지만 다른 행
특정한 측면에서는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O)
동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동물들이 우리
특정한 능력은 인간보다 열등하다 (O)
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 그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동물의 특별한 능력은 정신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O)
오히려 동물들은 그들의 정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 속에 있는 기관들의 배
동물은 정신과 육체가 단순하게 결합된 존재 (X)
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자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퀴와 태엽만으로
동물은 신이 만든 정교한 기계 장치 (O)
만들어져 있는 시계가 우리가 온갖 재주를 기울이는 이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능완성 59P)

슈바이처 『나의 생애와 사상』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에서 사고를 시작하였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다 (O)

다. 그는 이와 같이 사고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상의 길로 들어서게 되

었다. 이따위 내용 없는 허구적인 사고 행위로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우주에 대하여 어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만 강조하는 사고 (O)

떤 관계를 맺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 의식이 갖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사
인간을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존재로만 파악 (O)

실은 인간 의식에는 어떤 구체적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을 의미한다.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여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은 삶의 의지를 지닌 다른 생명체와 공존하는 존재 (O)

인간 의식의 가장 직접적인 사실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주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

는 순간에는 언제나 자신을 생명 의지 한가운데 서 있는 생명 의지로 파악해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O)

(수능완성 60P)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의 가치는 항상 조건적이다. 그것들의 현존이 비록

모든 대상은 수단적 가치 (O), 내재적 가치 (X)

우리의 의지에 의거해 있지 않고, 자연에 의거해 있는 존재자들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것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존재 (O)

들이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이라면,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며 그래서 물건

인간 이외의 존재 (O)

내재적 가치 (X)

들이라 일컫는다. 그에 반해 이성적 존재자들은 인격들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인간 (O)

도덕적 고려 대상 = 내재적 가치 (O)

본성이 그것들을 이미 목적들 그 자체로, 다시 말해 한낱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에서 모든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자의(自

意)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격들은 한낱 그것들의 실존이 우리 행위의 결과로

인간은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 (O)

서 가치를 갖는 주관적 목적들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목적들이다.

인간 행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다 (O)

(수능완성 62P)

요나스 『책임의 원칙』

인류가 이제까지 실행한 것과 앞으로 실행할 것에 의해 마땅히 실존해야 하든 안 하든 관
인류가 이미 실행한 것과 계획하고 있는 행위에 의해 (O)
계없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인류의 실존은 항상 우선적이다. 실존을 통해 자기 규제의 가
생태계의 안정이 최우선적인 과제 (X)
능성과 항상 초월적인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아야 한다. 우주적 책임으로서의 이 가능성
의 보존은 바로 실존에의 의무를 의미한다. 인류의 실존은 간단하게 인류가 살아 있다는
인류의 지속은 정언 명령 (O)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잘 산다는 것은 다음의 명령이다. ‘인류가 존재한다.’라는 적나라
한 존재적인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류가 계속 존재해야 한
다.’라는 존재론적 명령이 된다. (수능완성 62P)

대지 윤리는 환경 파시즘일까?

레오폴드는 인간이 대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삶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동물, 식물, 무생물 (O)
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인정은 하되 흙의 황폐화, 물의 고갈, 동식물의 멸
생태계 구성원들의 수단화 허용 가능 (O)
종으로 이어질 정도의 이용, 즉 생태계의 손상, 대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도의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레오폴드는 개체주의적 입장
보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을 채택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태 공
개체의 존재 가치는 전체의 안정성에 종속 (O)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구성원들의 생존
권 보장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개체주의적 성격을 띤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은 동료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전체주의의
입장이 드러난다. (수능완성 62P)

4. 주목해야 할 낱선 제시문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의욕하고, 또 우리가 지배하는 모든 것은 단지 수단으로서 사
세상의 모든 존재 (O)
용될 수 있다. 모든 이성적 피조물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즉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 법칙
이성적 존재 = 인간 (O) 주관적 목적 (X)
의 주체이며, 도덕 법칙은 그의 자유가 지닌 자율로 말미암아 신성하다.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 (O) 인간은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O)
(수능완성 63P)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중심주의

산다는 것은 식물에게까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감각을 동반하는 삶도 있지만 그러한 삶은 말과 소, 모든 동물들에게도
생명성은 인간만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다 (O)
공통되는 삶이다. 그렇다면 이성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사는 삶만이 인간의 고유 영역으
감각적 지각 능력도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다 (O)
로 남게 되며 그러한 삶만이 가치 있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이성적 사유와 실천 능력 (O)
(수능완성 63P)

슈바이처의 생명중심주의

생명의 긍정은 생명 의지의 심화요, 내면화요, 상승이다. 사고하는 인간은 다른 생명 의지
를 대할 때에도 자신의 생명 의지를 대할 때와 똑같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대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는 생명을 외경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O)
(수능완성 64P)

싱어의 동물중심주의

동물들은 스스로 해방을 요구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행성이 더 이상 생명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 (X)
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될 때까지 혹은 영원히 계속해서, 다른 종(種)들을 억압할
힘이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다른 종들을 지배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지배하에 있는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동물 지배는 비도덕적인 행위 (O)
무자비한 착취를 종식시킴으로써, 즉 종 차별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이타성을 발휘
공장식 동물 사육 중단, 과도한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 실험 중단 (O)
해야 한다. (수능완성 65P)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자연은 보호의 대상 = 자연은 간접적 의무의 대상 (O)
또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해서까지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동
자연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 (X)
물에 대해서 갖는 모든 의무, 그리고 생명이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 갖는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의 관계에 비추어 단지 간접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 이외의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O)
(수능완성 66P)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의 인종이나 성, 또는 종과
고통은 그 자체로 악 (O)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통이 얼마나 나쁜가는 그것이 얼마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O) 공리성의 원칙 (O)
나 강렬하며,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강도와 지속성을 갖
는 고통은 동일하게 나쁘며, 이것을 인간이 느끼는지 또는 동물이 느끼는지는 고통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수능완성 66P)
종차별주의 금지 (O)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도덕 행위자(moral agents)
도덕적 고려의 대상 =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 (O) 도덕적 행위의 주체 = 인간 (O)
에 의해 촉진되거나 손상 받을 수 있는 고유한 선(善)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여기
내재적 가치 (O)
서 도덕 행위자란 도덕적으로 또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지닐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소유하는 모든 존재이다.

살아 있는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도덕 행위자에 의해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 (O)
울거나 부당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도덕적 대상(moral subjects)이다. 따라서 도덕적 대
도덕적 행위의 주체 (X) - 도덕 주체 (O)
상은 도덕 행위자가 의무를 져야 할 실체의 지위를 갖는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 = 모든 생명체 (O)

(수능완성 148P)



5. 주의해서 읽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생명체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나아가는 존재이다.	X
아리스토텔레스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
데카르트	인간은 모든 측면에서 동물보다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X
데카르트	동물은 정신적 작용이 아니라 기관의 배치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이다.	○
베이컨	지구상 생명 간에는 위계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베이컨	지구상의 자원들은 인간에게 이용될 때에 그 존재 가치가 발생한다.	○
칸트	인간이 의욕하고 지배하는 모든 것은 단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칸트	자연은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대상에 해당된다.	X
패스모어	서양의 전통적인 윤리도 동물들을 도덕적 고려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X
패스모어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
싱어	인간은 종 차별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이타성을 발휘해야 한다.	○
싱어	인간은 동물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	X
레진	인간은 동물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육식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레진	삶의 주체인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이 희생되어야 한다.	X
슈바이처	인간은 자신을 생명 의지 한가운데 서 있는 생명으로 파악해야 한다.	○
슈바이처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칠 때에도 생명에 대한 책임은 발생한다.	○
테일러	도덕 행위자란 비도덕적으로는 행동할 수 없는 도덕적 존재이다.	X
테일러	살아있는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가진 도덕 주체에 해당된다.	○
레오폴드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무생물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
레오폴드	전체 생태 공동체의 보전을 위해서 개체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
요나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임을 인정해야 한다.	○
요나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감정을 이입하여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불교	자연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를 반영하는 관계들의 연쇄를 형성하고 있다.	○



6. 환경 윤리 읽기자료

□ 환경 윤리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인간은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② 쟁점 사항 : 각 사상가가 주장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과 고려의 방식
- ③ 주의 사항 :
 - 1) 도덕적 고려 대상은 인정하더라도 고려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
 - 2) 인간 중심주의의 목적론과 기계론은 서로 다른 사상가의 자연관
 - 3)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패스모어와 요나스 관점 차이
 - 4) 도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동물의 보호는 도덕적 실천과제

□ 공통 전제 : 인간은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

환경 윤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공통전제이다. 공통전제는 제시문에 별도로 서술하지 않는다. 제시문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공통적인 전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만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으며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선택지를 길게 서술하면서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표현에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익 관심이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상가들이 인간이 쾌고감수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과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 즉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서술은 타당한 것이다.

□ 주의 사항 : 1) 도덕적 고려 대상과 고려 방식의 차이

환경 윤리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과 도덕적 고려의 방식이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도덕적 고려의 방식을 서술한 내용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서술한 내용으로 착각하여 쉽게 매력적 오답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학생들이 대상과 방식의 차이를 몰라서 질문을 하고 있다.

- 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 ②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이 2개의 선택지는 모두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이다. ①번의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도 동물이며, ②번의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존재도 동물이다. 이 2개의 선택지는 같은 내용을 서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①번의 질문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서술한 것인데 반해 ②번의 질문은 도덕적 고려의 방식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하는가?라는 ①번의 질문에 대해서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는 모두 동의하는 대답을 할 것이다. 반면에 ②번 선택지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고려의 방식을 서술한 것이다. 즉 ②번 선택지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 중심주의자인 슈바이처는 도덕적 고려의 방식으로 ‘생명에의 외경’을 제시한다. 슈바이처의 입장에서 보기에 식물은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는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슈바이처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고려의 방식으로 이익 평등 고려의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그의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의 방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이다. 슈바이처가 인정하는 도덕적 고려의 방식은 이익의 평등 고려가 아니라 바로 생명에의 외경인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방식으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슈바이처가 강조하는 도덕적 고려의 방식을 생태중심주의자인 레오폴드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 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② 모든 생명체에 대한 생명에의 외경을 도덕 원리로 삼아야 하는가??

이 2개의 선택지도 자세히 분석해 보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서술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①은 도덕적 고려 대상을 서술한 것이고, ②는 도덕적 고려 방식을 서술한 것이다. 즉 ①은 생명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자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②는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생명에의 외경이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는 이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태중심주의에서는 무생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는데 무생물은 생명체에 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명에의 외경을 도덕 원리로 삼는다면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생명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그 고려의 방식이 생명에의 외경이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 사상가별 도덕적 의무 대상과 도덕적 고려 원칙

사상가	의무 대상	세계관	핵심 용어 /고려 방식	공통 용어
아리스토텔레스	(현재) 인간	개체론	목적론적 위계 서열	도덕적 고려 도덕적 지위 도덕적 권리 내재적 가치 본질적 가치
데 카 르 트			동물은 영혼없는 기계	
칸 트			동물보호 간접 의무	
패 스 모 어	(미래) 인간		타인에게 피해 금지	
레 건	(일부) 동물		일부동물 삶의 주체	
싱 어	(전체) 동물		이익평등 고려 원칙	
슈 바 이 처	(전체) 생명		생명에의 외경 원칙	
테 일 러			목적론적 삶의 중심	
레 오 폴 드	(전체) 생태	전일론(전체론)	생태계 온전함, 조화	

▣ 주의 사항 : 2) 목적론과 기계론은 서로 다른 자연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중에서 동물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입장과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을 이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다시 크게 목적론에 기반한 아리스토텔레스, 기계론에 기반한 데카르트로 구분된다. 이 두 사상가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목적론을 서술한 제시문과 기계론을 설명한 선택지를 결합하거나 기계론을 소개하는 제시문에 목적론을 서술한 선택지를 연결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목적론과 기계론은 인간 중심주의, 자연의 이용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상가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적론적 자연관]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기계론적 자연관]

인식 주체와 대상의 구분은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사유의 출발점이다.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에 불과하며 그 작용은 기계적 운동으로 환원된다.
동물은 복잡한 구조의 기계에 불과하며 쾌락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

▣ 주의 사항 : 3)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의 근거 비교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사상가는 패스모어와 요나스가 있다. 이 두 명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공통적인 입장이지만 그 근거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두 명을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비중있게 공부해야 한다. 이들은 새로운 도덕적 원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관점을 지니고 있다. 패스모어는 전통 윤리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간을 위한 생태계 보호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요나스는 기존의 윤리가 인류의 존속이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윤리와의 간극, 즉 윤리적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패스모어의 입장]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전통적 인간중심주의 (O)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타인에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 모두 해당 (O)

▶ 전통적 인간중심주의로 생태계 보호 정당화

패스모어는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서양의 전통적 인간 중심주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생태계 보호를 정당화한다. 즉 타인이라는 용어에는 미래의 인간이 포함되며 생태계 파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생태계 보호는 기존의 윤리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를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덕적 지위는 인간만이 갖는다고 판단하며 환경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로 간주한다. 즉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그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나스의 입장]

미래에 있을 심상치 않은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새로운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인간 행위의 책임윤리에 해당하는 윤리적 원칙 (O)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인류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미래 세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요나스는 이것을 정언명령으로 규정 (O)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윤리와의 간극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하였다. 그는 기존의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비판하며 의도한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 주의 사항 : 4) 도덕적 지위 인정 ≠ 도덕적 실천과제 = 도덕적 배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도덕적 고려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간주한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을 위한 의무인 것이다. 인간을 위한 동물 보호, 자연의 아름다움 보호는 인간을 위한 간접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패스모어도 현재나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연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이 인간만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착각을 유도하는 선택지를 구성하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도덕적인 실천 과제를 인정하는 것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 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 ②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 가능하다.

정확한 독해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①번과 ②번 선택지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같은 내용의 선택지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①번 선택지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중심주의자는 동의하지 않는 서술이다.

반면에 ②번 선택지는 동물 보호가 도덕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서술이다. 이에 대해서 인간중심주의자인 칸트와 패스모어는 인간을 위한 도덕적 의무로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따라서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표현과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명확하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매력적 오답에 유인당하지 않는다.



1. 분배 정의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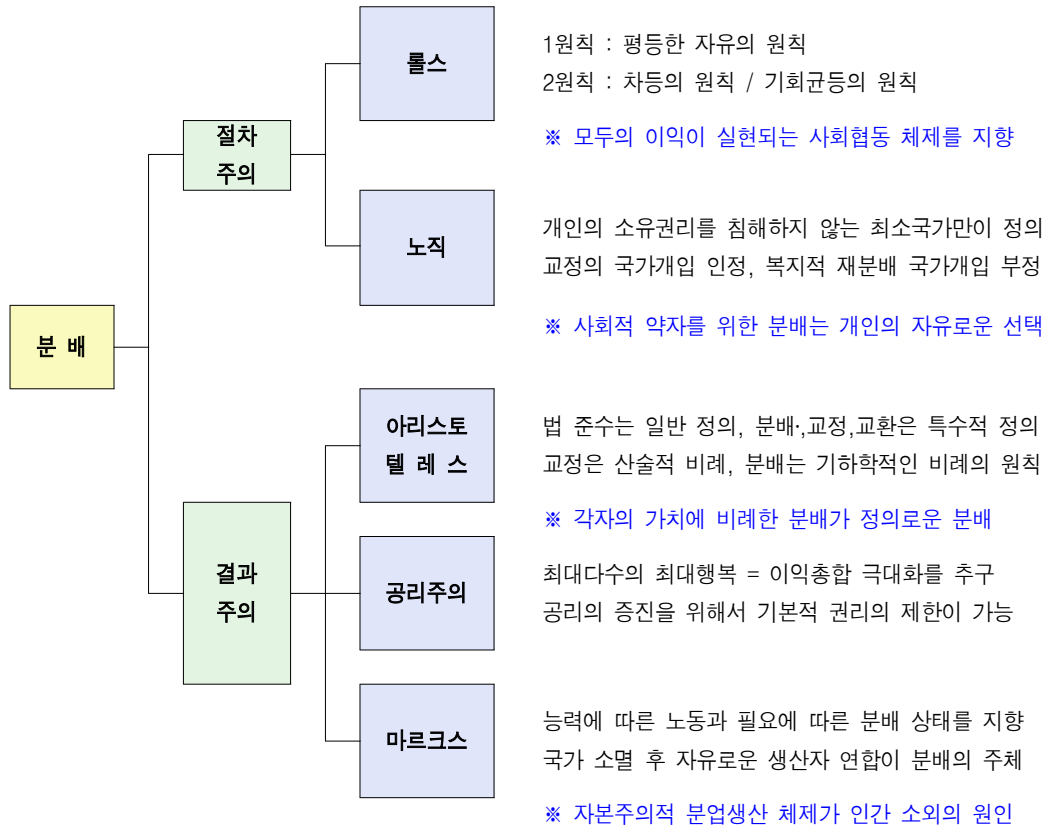
- ① 공통 전제 :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인정
(※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는 공통전제에서 예외)
- ② 쟁점 사항 : 분배 정의를 실현을 위한 국가 개입 여부와 분배의 원칙
- ③ 주의 사항 :
 - 1) 절차적 정의론에서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의 불평등함은 인정
 - 2) 절차적 정의론에서는 능력과 업적이라는 유일한 분배기준 반대
 - 3) 절차적 정의론에서 특정한 분배 목적을 위한 기본권 제한 불가
 - 4)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자유로운 분배와는 다른 의미

핵심 사상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 롤스
--------	----------------

- ①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의 합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
- ② 원초적 상황에서 자신의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모르지만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리에 합의
- ③ 제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
- ④ 제 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되는 것이며,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
- ⑤ 분배는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되,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
- ⑥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둬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
- ⑦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인 사실이며 우연적 차이의 영향력을 줄여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
- ⑧ 정의의 원칙들 간에는 우선 순위가 있으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다른 원칙보다 우선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2. 분배 정의의 핵심적인 대립구도

공통전제 : 교정적 정의를 위한 국가의 개입 인정,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
 ※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는 공통전제에서 예외



주의 사항 : 롤스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은 임의적 사실, 공유자산으로 활용

2018 학년도

학평 · 모평에서 출제된 고난도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롤스	최소 수혜자를 위해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를 차등 분배해야 한다.	X
롤스, 노직	정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가?	O, O
아리스토텔레스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O
롤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O
마르크스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국가 차원의 재분배는 정의롭다.	X

3. 선택지로 변형될 수 있는 읽기 자료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강탈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강탈하고 그에게 다양한 활동을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일 또는 보수가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직접 정하는 꼴이다. 이런 행위는 부분적으로나마 **개인의 자유 침해 (O)** 그들을 당신의 소유주로 만든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중략)… **누구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복지를 위한 세금의 징수 (O)** **복지를 위한 재분배에 국가 개입 반대 (O) -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재분배 반대 (X)** 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수능완성 78P)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한 기본권 침해 반대 (O)**

롤스 『정의론』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한 원칙 (O)**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전체의 더 큰 선을 보장한다**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불평등 정당 (O)**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O)** 는 이유로 **소수자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 가능 (X)** 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이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 때문에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개인이 지닌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 **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재능에 따른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 **천부적 재능은 개인의 소유이면서 공동의 자산 (O)** 한다. (수능완성 80P)

롤스 『정의론』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정의로운 분배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의해 규정 (O)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략)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이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 (X)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수능완성 80P)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정당 (O)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옳은 것이란 비례적인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란 비례를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이 정의는 비례의 원칙에 기반 (O)

행해질 때에는 어떤 향이 지나치게 커지고 다른 향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즉 부정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선을 취득하고, 부정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선을 취득한다. 악에 있어서는 사정이 거꾸로 되어 있다. 보다 작은 악은 보다 큰 악에 비하면 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보다 작은 악이 보다 큰 악보다 더 선택할 만한 것인데, 또 선택할 만한 것은 선이며 더욱 선택할 만한 것은 보다 큰 선이다. 그러니 이것이 옳음의 한 종류이다. (수능완성 80P)

4. 주목해야 할 낱선 제시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올바름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공정한 것일 것이며, 올바르지 않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일반적 정의 (O)

것이고 또 공정하지 않은 것일 것이다. ... (중략) ... 부분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은 정치적

특수적 정의 (O)

체제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나 부(富) 혹은 다른 어떤 것

들의 분배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 추구 (O)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한 몫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바로

잡는 것이다. 이러한 올바름은 어떤 종류의 동등함이고 또 올바르지 않음은 어떤 종류의

교정적 정의 = 시정적 정의 (O)

동등하지 않음이지만, 그 올바름은 다른 부류인 그 유형의 비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산술적 비례에 따른다. (수능완성 83P)

피해와 동등한 가치의 보상 (O)

롤스의 정의관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정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 (X)

절차가 정당하면 결과의 불평등 인정 (O)

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함을 나타낸다. 누구든

동등성의 원칙에 기반한 분배 (X)

간에 천부적으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 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 (O)

(수능완성 132P)

노직의 정의관

차등의 원칙과 같은 분배에서의 고정된 정형(定型)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O) 그의 ~에 따라 각자에게 (O)
할 수밖에 없다. 비정형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
역사적인 자격을 중시하는 원칙 (O)
지 않는다. (수능완성 137P)

롤스의 정의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
다수결에 의한 결정 (X)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이타성에 기반한 (X)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 사실에 무지한 상태 (X)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할 원칙들이다. (수능완성 137P)
사회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대되는 협동체 (O)

노직의 정의관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최소 국가의 역할은 계약의 집행과 재산권 보호 (O)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
포괄적인 국가의 기능 수행 반대 (O)
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 반대 (O)
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정부가 징수하는 모든 세금 반대 (X)

(수능완성 143P)



필요에 따른 분배

자원과 몫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와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의식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능완성 82P)
자유로운 분배 (X)
원초적 상태에서의 합의 (X)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분배한다는 것은 곧 능력과 노력의 결과에 대한 대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된 재화로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화를 얻기 위한 경쟁과 업적에 따른 분배는 필수적입니다.

(수능완성 82P)



5. 주의해서 읽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아리스토텔레스	부의 분배가 국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X
아리스토텔레스	개인선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공동선을 침해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	공공의 재화는 기하학적인 비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에서의 옳음은 어떤 의미에서든 가치에 따라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이익과 손해의 균등을 회복하는 교정적 정의는 일반적 정의에 해당한다.	X
롤스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들 간에는 서열이 존재한다.	○
롤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단일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X
롤스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그 사회를 부정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롤스	아무도 자신의 천부적 능력을 더 유리한 출발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다.	○
롤스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다.	○
노직	분배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들은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이게 한다.	○
노직	최초의 분배 상황에서도 정형적 원리에 부합한 분배는 불가능하다.	X
노직	비정형적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노직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 임의적이어도 제도적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
노직	최소 국가가 소득 재분배의 실행 주체가 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다.	X
공리주의자	소득 재분배는 부의 균등함이 아니라 사회의 총효용 증가에 기여해야 한다.	○
공리주의자	결과적 평등을 분배의 목표로 삼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다.	○
마르크스	사적 소유 및 국가가 소멸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분배가 실현된다.	X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른 노동과 능력에 따른 분배가 실현된다.	X

6. 분배 정의 읽기자료

▣ 분배 정의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인정
(※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는 공통전제에서 예외)
- ② 쟁점 사항 : 분배 정의를 실현을 위한 국가 개입 여부와 분배의 원칙
- ③ 주의 사항 :
 - 1) 절차적 정의론에서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의 불평등함은 인정
 - 2) 절차적 정의론에서는 능력과 업적이라는 유일한 분배기준 반대
 - 3) 절차적 정의론에서 특정한 분배 목적을 위한 기본권 제한 불가
 - 4)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자유로운 분배와는 다른 의미

▣ 공통 전제 :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인정

분배 정의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모든 사상가들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교정적 정의란 권리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권리 침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의 침해는 지적인 능력의 차이, 사회적 권력의 차이, 물리적 힘의 차이 등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야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은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노직은 복지를 목적으로 한 재분배의 국가 개입을 반대하고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고 주장한 것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노직은 복지를 위한 재분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교정적 정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노직은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고 주장한 것이지 정부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가 정의롭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는 교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정적 정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노직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선택지는 노직도 동의한다.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이 선택지는 앞에서 본 선택지와는 반대로 교정에 대해서도 국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노직은 국가개입에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맞는 서술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모든 사상가가 인정한다는 점을 공통 전제로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쟁점 사항 : 분배 정의를 위한 국가 개입 여부와 분배의 원칙

분배 정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분배 정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분배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다. 공동체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롤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는 모두 분배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소멸되기 때문에 국가가 분배의 주체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이라는 사회적 기구가 분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는 입장은 노직이다. 노직은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하면서 분배에서의 국가 개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분배의 원칙에서 가장 대립되는 두 관점은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관점이다. 자연적 우연성은 우연히 타고난 재능, 사회적 우연성은 우연히 소속하게 된 사회적 신분을 의미한다. 롤스는 이 두 요소에 의해서 사회적 이익의 분배가 이로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성은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노직은 타고난 재능으로 인한 성과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의 간주하는가?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적 요소에 의한 유리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보는 롤스는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노직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은 개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또한 개인의 재능은 무력, 절도, 사기 등에 의해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주의사항 : 1) 절차적 정의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의 불평등 인정

롤스와 노직 모두 결과의 측면이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 정의를 중시한다. 분배의 절차와 과정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이들은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결과의 평

등을 추구하는 마르크스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지닌다. 또한 결과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관점과도 구분된다.

분배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롤스와 노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점은 각종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함과 불평등함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공정함과 불평등함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롤스의 주장에 따르면 절차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노직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축적해서 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의와 결과의 불평등을 연결해서 서술한 선택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정의실현을 위한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는 정당성을 갖는다.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선택지들은 모두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서술한 것이다. 정의와 불평등이 동시에 인정될 수 없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만 매력적 오답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절차를 중시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은 분배 정의를 추구한다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둬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 모두가 동등한 상태를 지향하는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 주의사항 : 2) 절차적 정의는 능력과 업적이라는 유일 기준 반대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절차적 정의론에서는 능력과 업적이라는 기준만으로 분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의 학생들이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롤스와 노직이 모두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단일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오해를 한다. 하지만 롤스와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의 절차를 규정할 뿐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즉 롤스는 공정성(fairness)로서의 정의를 강조하며 사람들이 합의한 공정한 절차, 노직은 취득·양도의 공정한 절차를 중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인가?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재화가 분배되어야 하는가?

이 2개의 선택지 중에서 첫 번째 선택지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분배의 단일 기준으로 업적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명확하게 묻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지는 그 의미가 조금 불분명하다.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인지,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가 불분명하다. 이럴 경우에는 독해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되어야 하는가?”는 당위적인 측면으로 서술된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분배 기준은 무조건 능력과 업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2개의 선택지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롤스와 노직이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된다.

▣ 주의사항 : 3) 절차적 정의론에서 특정한 분배 목적을 위한 기본권 제한 불가능

롤스와 노직은 특정한 분배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공리주의는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배 정의의 제시문으로는 롤스와 노직을 기본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공리주의 사상가중 1명이 추가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가될 경우에는 분배의 주체가 개인인지 아니면 사회 또는 국가인지를 묻는다. 롤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또는 국가가 분배의 주체라는 입장인 반면에 노직은 개인이 분배의 주체라는 점에서 대립된다. 마르크스가 추가될 경우에는 분배의 기준에서는 사회적 필요, 분배의 결과에서는 평등한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에 해당되는 지를 묻는다. 공리주의 사상가가 결합될 경우에는 기본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러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차등의 원칙 -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을 위한 불평등 -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롤스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오해를 한다. 하지만 롤스는 정의의 제 1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하며 특정한 분배 목적을 위해서 이 원칙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정치적 측면에서의 평등한 자유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 기본권은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 자유 제한은 부당한가?

학생들에게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지이다. 롤스는 사회적 약자(=최소 수혜자)을 위한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제 2원칙으로 인정한다.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한 학생은 롤스는 사회적 약자(=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롤스의 입장과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착오를 범한다.

롤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도 차등의 원칙을 떠올리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롤스는 기본적 자유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평등한 자유라고 전제한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는 분배적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분배 정의를 위한 기본적 자유 제한은 부정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에서 살펴 본 선택지의 경우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 2개의 선택지는 쉽게 롤스
나 노직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수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선택지는 다수의 이익, 사회 전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롤스와 노직이 개인의 자유 침해나 약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2개의 선택지는 롤스와 노직 모두 타당한 서술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 주의사항 : 4)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자유로운 분배와는 다른 개념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 이 중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
를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자유로운
분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말한 필요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필요하
고 마음대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소멸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생
산자 연합이라는 사회적 기구에서 각 개인의 사회적 필요를 판단하여 재화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분배를 자유로운 분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3. 사형 제도

1. 사형 제도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국가가 시행하는 비례적 형벌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
- ② 쟁점 사항 : 사형제 찬반 입장과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 목적 구분
- ③ 주의 사항 :
 - 1) 국가의 형벌권은 공통적으로 인정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이견
 - 2) 비례성 원리는 모든 사상이 인정, 동등성 원리는 응보론만 인정
 - 3)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벌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
 - 4) 응보론은 인간 존엄성 존중, 예방론은 일반 예방, 특수 예방을 추구

핵심 사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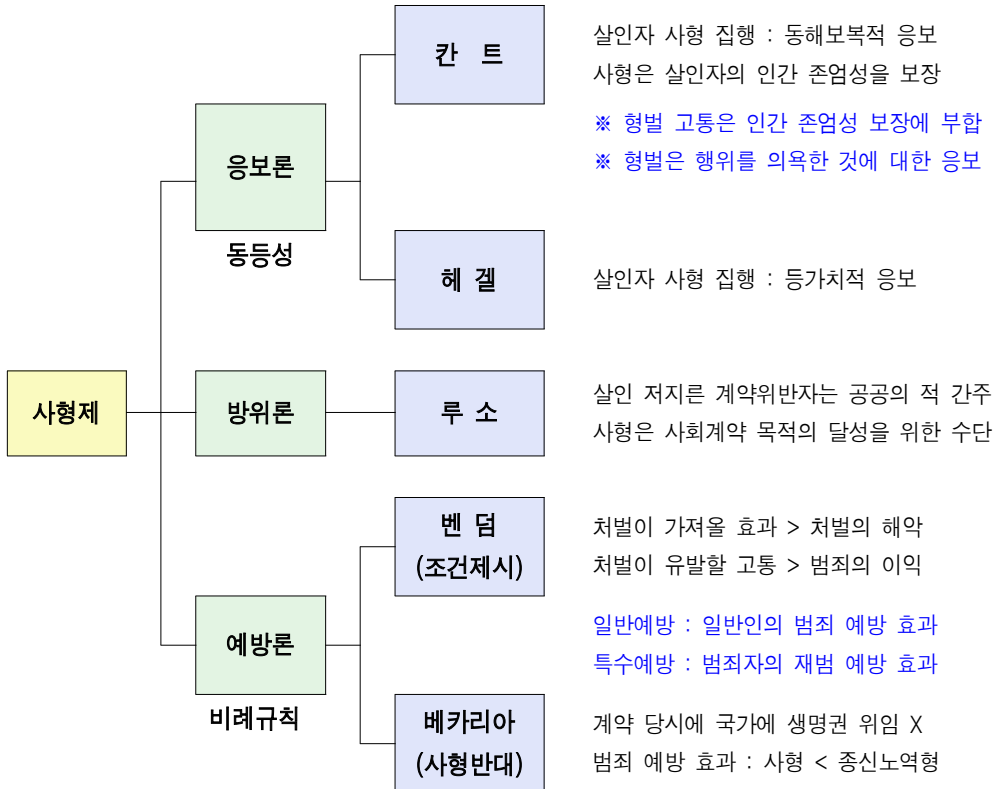
응보적 정의론 : 칸트

[형벌에 대한 칸트의 입장]

- ① 형벌의 본질은 응보이며, 응보적 정의에 기반한 사형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으로 간주
- ② 형벌의 고통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해야 하며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으로서 정당화
- ③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④ 오직 등가성의 원리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 ⑤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위하는 자율적 존재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
- ⑥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한다고 주장

2. 사형 제도의 핵심적인 대립구도

공통전제 : 국가가 형벌의 주체이며 형벌은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



주의 사항 : 동등성의 원리는 응보론에서만 인정하는 공적 정의의 실현 원리

2018 학년도	학평 · 모평에서 출제된 고난도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베카리아	범죄 억제력을 고려하여 형벌의 등급을 정해야 한다.	○
칸트	사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X
베카리아, 벤담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벤담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할 경우에만 적합한 형벌이다.	○
베카리아, 루소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X,X

3. 선택지로 변형될 수 있는 읽기 자료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중략) ... 한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범죄자가 형벌을 통해 받은 해악의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 정도를 넘어서 모든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폭압적인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을 반복 체험함을 통해서이다.

(수능완성 79P)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사회 계약에 의해 사형제 정당화 (X)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사형제는 사회 계약에 위배되는 형벌 (O)

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 국가가 한 시민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수능완성 79P)

4. 주목해야 할 낱선 제시문

칸트의 응보론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형벌은 응보적 정의의 실현 수단 (O) 동해 보복적 응보 (O)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살인을 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것이
사형제 찬성 (O)

그를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끄적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 실현의 수단 (O)

것이기도 하다. (수능완성 86P)

베카리아의 예방론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에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는 일시적이다 (O) 범죄 예방 효과 : 종신형 > 사형 (O)

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범죄 예방에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O)

(수능완성 86P)

범죄 예방론

법을 어긴 행위를 한 자를 벌하는 것을 예고하거나 즉시 처벌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두
예고가 아니라 처벌을 함으로써 (X)

려움을 일으켜 일반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X)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형벌에 대한 찬반 여부가 결정

되어야 한다. 사형은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

(수능완성 86P)

칸트의 응보론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와 어느 정도의 처벌을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접시저울에서와 같은 평형의 원리이다. …(중략)…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너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원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 형벌의 집행 근거는 응보적 정의 (O)다. (수능완성 86P)

루소의 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은 그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사회 계약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 보전 (O) 사형 집행 (O) 생명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의 생명을 내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 수용 (O)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수능완성 137P)

칸트의 응보론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그리고 사형은 형벌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기해져야 한다 (X)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범죄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사형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 수단 (O)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형벌 (X) 준다. (수능완성 137P)

벤담의 예방론

모든 법령이 지니고 있거나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행복
형벌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실현에 기여할 때 정당 (O)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
든 것을, 달리 말하면 폐해를 없애고자 한다.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
의 원리에 의할 때, 만약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수능완성 141P)
형벌의 해악 < 예방되는 범죄의 해악 (O)

칸트의 응보론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것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의 정의가 선형적으로 정초된 보편적인 법칙
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사형의 집행은 도덕 법칙에 따른 의무 (O)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수능완성 141P)



5. 주의해서 읽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칸트	사형 제도는 인간 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칸트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다.	○
칸트	살인자에게 협력했던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의 대상이 아니다.	X
칸트	살인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선인가?	○
칸트	사형은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응당한 보복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X
칸트	살인자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정의를 만족할 다른 대안은 없다.	○
벤딤	범죄에 대한 형벌의 예고가 아니라 즉각적 처벌이 예방효과를 유발한다.	X
벤딤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형벌만이 정당한 것이다.	○
벤딤	형벌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벤딤	형벌은 징벌적 효과와 범죄 예방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X
벤딤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
벤딤	형벌의 대상인 인간은 어떤 다른 사회적 선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
베카리아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베카리아	바람직한 형벌은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다.	○
베카리아	사형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집행해야 한다.	X
베카리아	사형이 지니는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베카리아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자의 무력화가 아니라 교화 효과를 위한 것이다.	X
베카리아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다.	○
루소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형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
루소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

6. 사형 제도 읽기 자료

▣ 사형 제도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국가가 시행하는 비례적 형벌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
- ② 쟁점 사항 : 사형제 찬반 입장과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 목적 구분
- ③ 주의 사항 :
 - 1) 국가의 형벌권은 공통적으로 인정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이견
 - 2) 비례성 원리는 모든 사상가가 인정, 동등성 원리는 응보론만 인정
 - 3)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벌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
 - 4) 응보론은 인간 존엄성 존중, 예방론은 일반 예방, 특수 예방을 추구

▣ 공통 전제 : 국가가 시행하는 비례적 형벌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

사형제도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통 전제는 국가가 시행하는 비례적 형벌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라는 것이다. 근대 국가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법한 자력 구제는 형법상으로 범죄에 해당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형벌권은 오로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다. 형벌권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는 형벌의 주체가 된다. 이때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유죄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의 형벌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처벌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혐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처벌의 과잉을 금지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즉 그 정도가 약한 범죄에는 약한 수준의 형벌, 강한 범죄에는 강한 형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근대 형법의 기본적인 전제이므로 국가는 비례적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가 된다. 이 조건에 덧붙여 형벌은 응보론에서는 응보적 정의, 예방론에서는 공리적 정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계약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국가가 시행하는 비례적 형벌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라는 것은 사형제와 관련된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형벌이라는 단어를 사형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순간 특정 사상가만 인정할 수 있는 서술이 된다. 즉 사형에 반대하는 사상가는 사형제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택지를 읽을 때 형벌을 공적 정의의 수단이라고 서술했는지, 사형을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라고 서술했는지를 주의깊게 읽어 보아야 한다.

형벌의 경중을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여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선택지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범죄의 해악’이라는 용어는 예방론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응보론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응보론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서술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칸트는 ‘동해(同害)보복적 응보’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손해)와 동등한 응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응보론에서도 해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형벌은 해악(=범죄의 경중)에 비례해서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를 한다.

▣ 쟁점사항 : 사형제 찬반 입장과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 목적 구분

사형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사형제 찬반 입장을 구분하는 것과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쟁점 사항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고난도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사형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응보론과 사회 방위론 뿐이다. 예방론은 형벌의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결론적으로는 사형 찬성론)과 사형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사형은 사회 계약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가?

이 2개의 선택지는 사형제를 특정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사형제도 찬성의 입장에서만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동등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등성의 원리’는 응보론의 사상가들만 인정하는 형벌의 원칙이므로 칸트와 헤겔만이 선택지에 동의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사형의 목적이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이라고 했으므로 사회 계약론에 기반해서 사형제를 찬성한 사회 방위론의 루소만 인정할 수 있는 서술이 된다.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사형 제도 존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있는가?

이 3개의 선택지는 사형제를 유용성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즉 공익 여부, 사회적 유용성,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논하고 있다. 예방론은 공리주의적 논증을 기반으로 형벌의 목적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실현, 즉 공리의 증진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예방론에서는 특정 제도가 공익의 증진,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에 있다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이 3개의 선택지 중에서 첫 번째 선택지는 논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첫 번째로 응보론에서 주장하는 응보적 정의가 실현된다면 공익이 실현된다고 판단하여 응보론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응보론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법칙에 따른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칸트는 시민 사회의 해체가 예상되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공익의 증진 여부가 사형 제도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응보론에서는 공익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응보의 원리가 정언적 명령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는 측면을 본다면 응보론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택지는 응보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기는 하지만 실제 응보론과 이 선택지를 결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주의사항 : 1) 국가의 형벌권은 모두 인정, 사형제는 이견

국가가 형벌권을 갖는다는 것은 근대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따라서 응보, 사회계약, 범죄예방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향하더라도 모든 사상가는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사상가들의 입장이 대립하는 지점은 사형제이다. 따라서 제시문과 선택지를 읽을 때 형벌권과 사형권을 구별해야 한다.

갑은 을과 달리 국가가 사형권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위의 선택지들은 모두 사형제에 대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즉 사형제 찬성론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앞으로 사형권을 형벌권으로 대체하여 출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벌권은 모든 사상가들이 인정하는 공통 전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 주의사항 : 2) 비례성은 모두 인정, 동등성은 응보론만 인정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비례성과 동등성이다. 비례성은 범죄의 해악 정도에 따라 형벌의 해악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해악의 정도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형벌의 강도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은 처벌의 과잉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모든 사상가가 인정한다. 반면에 동등성(또는 등가치성)은 응보론에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와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의 학생들은 범죄 행위와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 해악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의 강도도 심화되는 것이므로 동등성과 비례성이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동등성의 개념은 형벌의 강도 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형벌의 형태)까지도 규정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동등성



의 원리이다. 따라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르면 사형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예방론에서는 동등성의 원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사형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첫 번째 선택지는 사형의 목적을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동해보복적 수단으로서 사형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선택지는 사형제에 찬성한다는 점, 응당한 보복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응보론이 인정하는 서술이다. 두 번째 선택지도 사형제도를 보복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이라는 수식어구이다. 보복의 수단인 것은 응보론이 확실한데, 동등성의 원리가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이라는 비례성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비례성의 원리는 모든 사상가가 인정하는 공통전제이기 때문에 응보론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서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주의사항 : 3) 형벌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욕한 것

생윤 문제의 각종 선택지가 점점 복잡해 지면서 학생들이 제시문과 선택지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출제자들이 중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제시문과 선택지를 서술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과 윤리의 핵심적인 대립구도, 제시문에 서술된 내용, 상식 등을 동원해서 출제자의 서술 의도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오독에서 벗어나서 선택지를 정확하게 읽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 사형제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선택지의 잘못된 독해를 유발한 대표적인 제시문과 선택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O) - 처벌받기 위한 행위 (X)

제시문에서는 형벌은 범죄자가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수식어구를 제거하면 행위를 의욕한 것에 대한 응보로서 처벌의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런데 해석에서 수식어구를 포함하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서술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받아야 할’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특정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처벌 받아야 할 행위’를 ‘처벌을 받기 위해서 저지른 행위’라고 제시문

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벌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 특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다. 즉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독해를 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보복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시문 독해에서 오류가 발생한 학생들은 이 선택지가 제시문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즉 보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제시문에서는 범죄자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원한 것이 원인, 처벌이 결과라면 이 제시문에서 처벌을 원한 것이 원인, 처벌을 받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서 착각을 유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 주의사항 : 4) 응보론은 인간 존엄성, 예방론은 일반 예방, 특수 예방 추구

응보론과 예방론은 사형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목적에서도 차이가 난다. 응보론은 살인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서 사형제를 찬성하며 사형제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예방론은 범죄 예방 효과라는 측면에서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예방 효과를 일반 예방과 특수 예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의 학생들은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응보론에서는 사형제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형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을은 갑과 달리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

응보론에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처벌하는 것만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준다고 말한다. 즉 살인자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인격성, 인간성을 파괴하므로 사형을 통해서 이러한 죄책감을 없앤다면 스스로의 인격성 파괴, 인간성 파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형벌이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라고 이해한다면 응보론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벌의 부과하는 고통’이라고 서술했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은 예방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니까 응보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응보론에서 동해보복적 응보를 강조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동등한 해악’이라는 단어에서 ‘해악’이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이라는 용어가 응보론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또 그 고통이 범죄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방론과 관련된 선택지는 예방 효과가 정당화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예방의 종류를 제시하는 것의 2가지 종류가 주로 활용된다. 먼저 예방 효과가 정당화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선택지를 확인해 보자.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
형벌의 해악은 형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예방론의 효과는 2가지 논리가 제시된다. 첫 번째는 형벌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방효과가 발휘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벌의 해악이 형벌이 방지할 해악보다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형벌의 해악이 형벌이 방지할 해악 (=범죄의 해악)보다 더 크다면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형벌의 해악이 형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만 출제되었다. 앞으로는 형벌의 해악이 형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두 번째로 예방의 종류를 서술하는 선택지의 출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방론에서 강조하는 예방의 종류에 대해서 심화된 이해가 필요하다.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흉악범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일반인에 대한 본보기 효과인 일반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 효과인 특수 예방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론에서 주장하는 2가지 예방 효과를 모두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다루고 있다. 즉 특수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선택지는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를 특수 예방 효과라고 단정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선택지와는 다른 서술이다. 이 서술은 일반 예방 효과가 아니라 특수 예방 효과가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한 점에서 주의깊게 살펴 봐야 한다.



1. 시민 불복종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시민 불복종은 체제가 아니라 법률·정책 변경 목적
- ② 쟁점 사항 : 정당성의 근거 논쟁과 최후 수단으로서의 인정 여부
- ③ 주의 사항 :
 - 1)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는 위법한 행위
 - 2) 드워킨은 헌법 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시민불복종 가능하다는 입장
 - 3) 소로는 법을 넘어선 개인의 양심이 불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 4)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정당성의 판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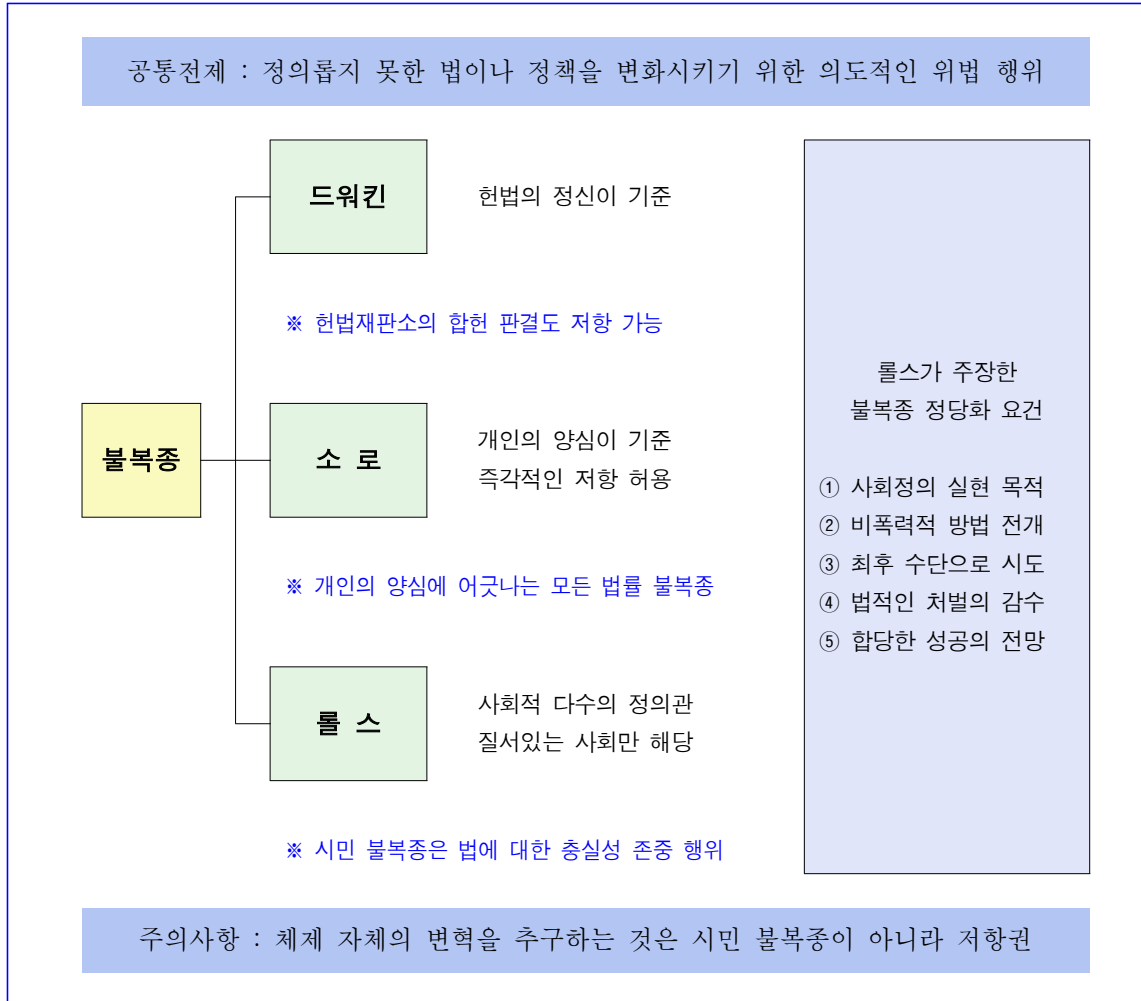
핵심 사상가

법에 대한 충실성에 기반한 시민 불복종 : 롤스

- ①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임
- ②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해 현저하게 위배될 경우에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음
- ③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을 시도했으나 그것들이 소용이 없을 경우에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가 보편화 가능해야 하며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함
- ④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말임
- ⑤ 시민 불복종은 비록 불법적이긴 하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



2. 시민 불복종의 핵심적인 대립구도



2018 학년도	학평 · 모평에서 출제된 고난도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롤스	시민 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
롤스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X
소로, 롤스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
롤스	시민 불복종이 성공하리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
롤스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 행위인가?	○

3. 선택지로 변형될 수 있는 읽기 자료

소로 『시민 불복종』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우선 (O)
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책무는
양심의 실천 의무가 법률의 준수 의무보다 우선한다 (O)
어느 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중략)…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주관적 신념 (X) - 양심과 신념 (O)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소수가 무력
시민의 불복종을 실천하고 처벌을 수용하는 것 (O)
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하여 막을 때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수능 특강 88P)

마틴 루서 킹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가?』

양심적으로 볼 때 부당하게 판단되는 법들은 위반하되 지역 사회의 양심에 그 법률의 부
시민의 불복종은 합법적 행위 (X)
당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징역형도 불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법률을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이
시민의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진행 (O)
다. …(중략)… 화상은 덮어 놓으면 쉽게 낫지 않으므로 흉해 보이더라도 자연의 빛과 공
기에 노출시켜 치료해야 한다. 불의를 드러내면 긴장이 야기되지만 인간 양심의 빛을 쫓
이고 국민적인 여론의 공기를 접할 수 있도록 노출시켜야만 이러한 불의는 치유될 수 있
부정적인 법률이 국민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O)
다. (수능특강 88P)

- 만일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그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나 더욱이 다른 부정의를 부정의한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X) 제거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 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 2 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
- 우리는 보통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 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법적인 보상 수단은 아무런 소용도 없음이 판명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책의 개정이나 폐지에 실패 (O)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존하는 정당이 소수자의 요구에 대해 그들 스스로 무관심을 나타내고 기꺼이 그 편의를 도모해 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을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무시되고 합법적인 항거와 시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수능완성 89P)

4. 주목해야 할 낱선 제시문

로크의 준법의 의무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개인이 정부의 통치권 안에 있는 어느 것을 소유하거나 향유하건 간에, 그는 그 행위에 의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그것들을 향유하는 동안에는 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정부의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수능완성 92P)

정당하지 않은 정부의 정의롭지 않은 통치에도 복종 (X)

롤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O) 체제의 합법성 인정 (O)

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

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법에 대한 충실은 다수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처벌의 수용 (O)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또한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

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수능완성 94P)

롤스의 시민 불복종

헌법이 올바르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혜택을 계속 받기로 했다고 가정한다면,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면 (O)
다수자가 제정한 것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복종할 책무와 당연한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부정의가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을
조건하에서 그렇다. (수능완성 135P)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상황 (O)

소로의 시민 불복종

법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
람들이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법과 질서를 아끼는 이들이며, 정부가 법을 위반할 때 법을
지켜 주는 사람들이다.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단순히
따르지 말고 그에 저항해야 한다. (수능완성 135P)

소로의 시민 불복종

정부란 국민들이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편의상의 체제에 불과하다. 양심을 통해
정부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 (O)
시비를 결정하는 정부는 불가능한가?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
양심적 판단이 법률적 판단에 우선 (O)
다. 인간은 법을 존중하기보다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권리란 언제나 자
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의무를 말한다. 법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
개인의 양심은 항상 다수의 정의감과 일치 (X)
를 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그 법은 즉시 위반해야 한다.
신중한 판단은 악법의 지속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X)
(수능완성 149P)



5. 주의해서 읽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롤스	부정의가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일단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롤스	합법적 항거와 시위가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불복종을 해야 한다.	○
롤스	성공의 가능성을 고려한 시민 불복종은 진정한 불복종이라고 할 수 없다.	X
롤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은 시민의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롤스	부정의가 심각한 법률이라도 정당한 절차로 제정되었다면 준수해야 한다.	X
롤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다수의 여론에 따라서 시민의 불복종을 해야 한다.	X
롤스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한 모든 원칙이 시민 불복종 정당화의 근거이다.	X
롤스	정의의 근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부정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
롤스	시민의 불복종은 법이 정의로부터 이탈했을 때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다.	○
소로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저항해야 한다.	○
소로	양심에 어긋나는 악법과 달리 불의한 정부는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X
소로	정부란 국민들이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편의상의 체제에 불과하다.	○
소로	개인은 자국의 부정한 법률을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소로	법을 넘어선 개인의 양심이 시민 불복종의 최종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	○
소로	정부의 타협안이 제시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X
소로	불복종의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과 합치하는 개인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X
소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인류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우선한다.	○
소로	양심에 어긋난 법률에는 즉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복종해야 한다.	X
드위킨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헌법의 정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X
드위킨	현명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X



6. 시민 불복종 읽기 자료

▣ 시민 불복종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시민 불복종은 체제가 아니라 법률·정책 변경 목적
- ② 쟁점 사항 : 정당성의 근거 논쟁과 최후 수단으로서의 인정 여부
- ③ 주의 사항 :
 - 1)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는 위법한 행위
 - 2) 드위킨은 헌법 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시민불복종 가능하다는 입장
 - 3) 소로는 법을 넘어서 개인의 양심이 불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 4)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정당성의 판단 근거

▣ 공통 전제 : 시민 불복종은 체제가 아니라 법률·정책 변경 목적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모든 사상가들이 동의하는 전제는 체제의 변혁이 아니라 일부의 부정한 법률·정책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시민의 불복종이다. 이 시민 불복종은 서구의 자연법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데 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의 정당성을 검토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개인은 자국의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따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불복종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이 제시되었다.

시민 불복종과 달리 체제와 정부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저항권에 해당한다. 민주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체제나 정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저항권인 것이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정치 체제의 변혁이 시민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2개의 선택지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의 일부의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두 번째 선택지는 정치 체제의 변혁이 시민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2개의 선택지 중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첫 번째 선택지이다. 정치 체제의 변혁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인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권이다.

▣ 쟁점 사항 : 정당성의 근거 논쟁과 최후 수단으로서의 인정 여부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는 학자는 대표적으로 드워킨, 소로, 롤스의 3명이 있다. 이들은 시민 불복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정당화의 근거는 모두 다르다. 드워킨은 헌법 정신, 소로는 개인의 양심,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정의관(공공적 정의관)을 저항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세 명이 주장하는 정당화의 근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는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일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가 형성된 이유는 2016년 수능특강의 개념 설명 때문이다. 2016년 수능특강 137P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중의 하나로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함'이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7년 수능특강 137P에서는 이 설명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변경되어 서술되었다.

2017년 수능 특강에서도 드워킨의 입장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법이 개인에게 부정의한 일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불복종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로는 시민의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청원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택지는 시민 불복종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롤스는 인정을 하겠지만 소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악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 방법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전에 사람의 목숨이 끝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마련한 방법, 즉 합법적 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비판한다. 소로는 롤스와 달리 부정의한 법률에 대한 즉각적 저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소로는 비폭력적인 방법만 인정했다고 간주하는 반면의 일부 소수의 학자들은 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시민불복종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 법치주의와 시민 권리를 중심으로 (하승우,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라는 논문에 따르면 '소로우는 시민이 최선을 다해 권력에 갇든 악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때때로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소로우는 미국의 노예폐지론자인 존 브라운(J. Brown)을 옹호하면서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커크 2005, 48-49; 오현철 2001, 57-58).'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폭력을 활용한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수능 특강에서는 롤스와 싱어만 비교하고 있는데, 소로의 입장을 묻는다면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 주의 사항 : 1)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는 위법 행위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저항권과 달리 체제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다. 그래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규정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① 공공적이고 비폭력적 성격, ② 행위의 법적인 결과인 처벌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한다는 말과 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서술처럼 보인다. 법에 충실하다면 불복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에 대한 충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법에서 금지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 법에 의한 처벌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며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좋다. 그래서 선택지에 낯선 용어가 서술되어 있다면 항상 제시문과 비교해서 그 의미가 유사한지를 파악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제시문에서는 이렇게 불복종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불복종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정부=전체적인 법체계)가 폭력적인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비폭력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가하는 처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행위이다.

그런데 이 선택지에서는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일부의 학생들은 이 표현을 특정한 법률과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 이 서술이 맞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특정한 법률과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다. 법이 지니고 있는 가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에 반하는 행위는 맞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한다는 서술은 잘못된 것이다.



▣ 주의 사항 : 2) 드워킨은 헌법 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시민 불복종 인정

드워킨은 비록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 정신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법률이라면 시민이 그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수능 특강에서는 드워킨의 입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의 저작 일부를 발췌하여 자료 플러스로 실어 놓지도 않았으며, 그의 주장을 제시문으로 활용한 문제도 없다. 따라서 드워킨의 입장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입장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알아둘 필요는 있다.

드워킨은 불복종을 ① 인격(integrity도덕성)에 근거한 불복종, ② 정의에 의거한 불복종, ③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으로 구분한다. 인격에 근거한 불복종의 사례는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노예를 돕는 것을 금지했던 도주노예방지법이 시행되던 때, 이에 반기를 들고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해진 불복종이 있다. 정의에 의거한 불복종은 법률이나 정책이 정의를 지 못하다는 신념에 의한 불복종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에 의한 불복종은 다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설득의 전략과 강요의 전략이 모두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은 부정의나 부도덕보다는 정책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거나 불합리한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불복종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과 상충되는 강요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수능특강에서는 정의에 의거한 불복종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비폭력적 강요에 의해서 구성되는 다수자의 동의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드워킨은 법의 유효성이 의문스러울 경우 개인은 유권적인 최고재판소의 반대판결 이후라 할 지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법에 불복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관용의 책임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불복종을 가급적 무죄판결해야 하고 유죄선고가 불가피할 경우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주의 사항 : 3) 소로는 법을 넘어서 개인의 양심이 불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로는 불복종 정당화의 근거로 개인의 양심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이 양심에 어긋날 경우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즉시 어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양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복종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소로의 입장에서는 불복종 정당화의 기준은 개인의 양심이며,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즉각적인 저항으로 인정된다.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



실제로 2017학년도 6월 모평에서 위의 선택지가 출제된 문제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로가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 양심을 제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이라는 표현에서 ‘모든’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주저한 것이다. 늘 얘기하지만 사상가들은 ‘오직’, ‘모든’ 등의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표현들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이 선택지는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모든 법’은 전칭 표현인 것 같지만 ‘양심에 어긋나는’이라는 문장에 의해서 수식되므로 전칭 표현이 아니라 특칭 표현이다. 즉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로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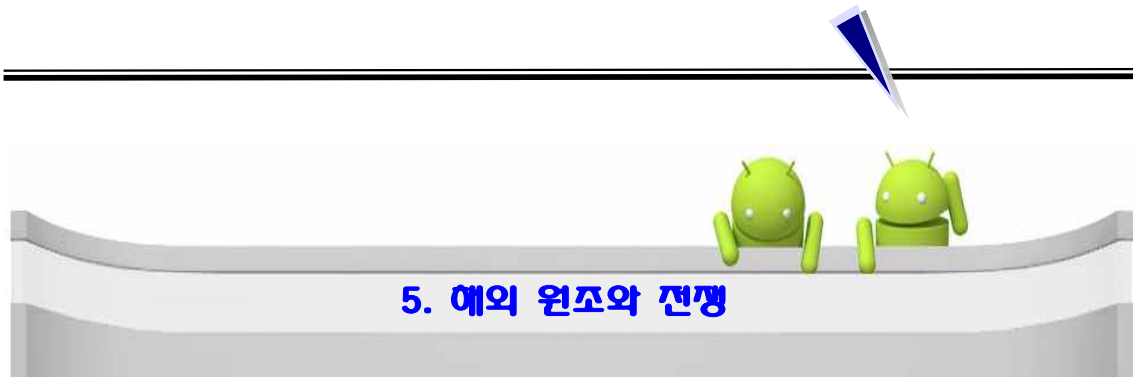
수능 특강에서 서술된 표현 중에서 주목할 것은 ‘주관적 신념’이라는 표현이다. 양심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는 반면에 ‘주관적 신념’은 ‘자기의 견해와 관점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믿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심과 주관적 신념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주관적 신념과 다른 법은 준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주의 사항 : 4)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정당성의 근거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제시한다. 이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정의관은 공공적 정의관, 공동체의 정의감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공유된 정의관은 바로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 2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소로와 비교할 때 롤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의 원칙, 소로는 개인적 양심을 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한다는 차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롤스는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의 시정을 위해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 소로는 자신이 불의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지향한다는 차이점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해외 원조와 전쟁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원조 의무 인정론은 절대빈곤 탈피를 위한 원조가 보편적 의무
- ② 쟁점 사항 : 원조 목적과 단위,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원칙, 전쟁의 정당성
- ③ 주의 사항 :
 - 1) 롤스는 사회, 싱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원조를 더 중시
 - 2) 롤스는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의 원칙 구분, 싱어는 동일 원칙
 - 3) 정의 전쟁론에서는 전쟁 의도, 과정, 결과의 정당성 구분 평가
 - 4) 영구 평화론에서 국제적 연맹은 세계 정부가 아니라 국제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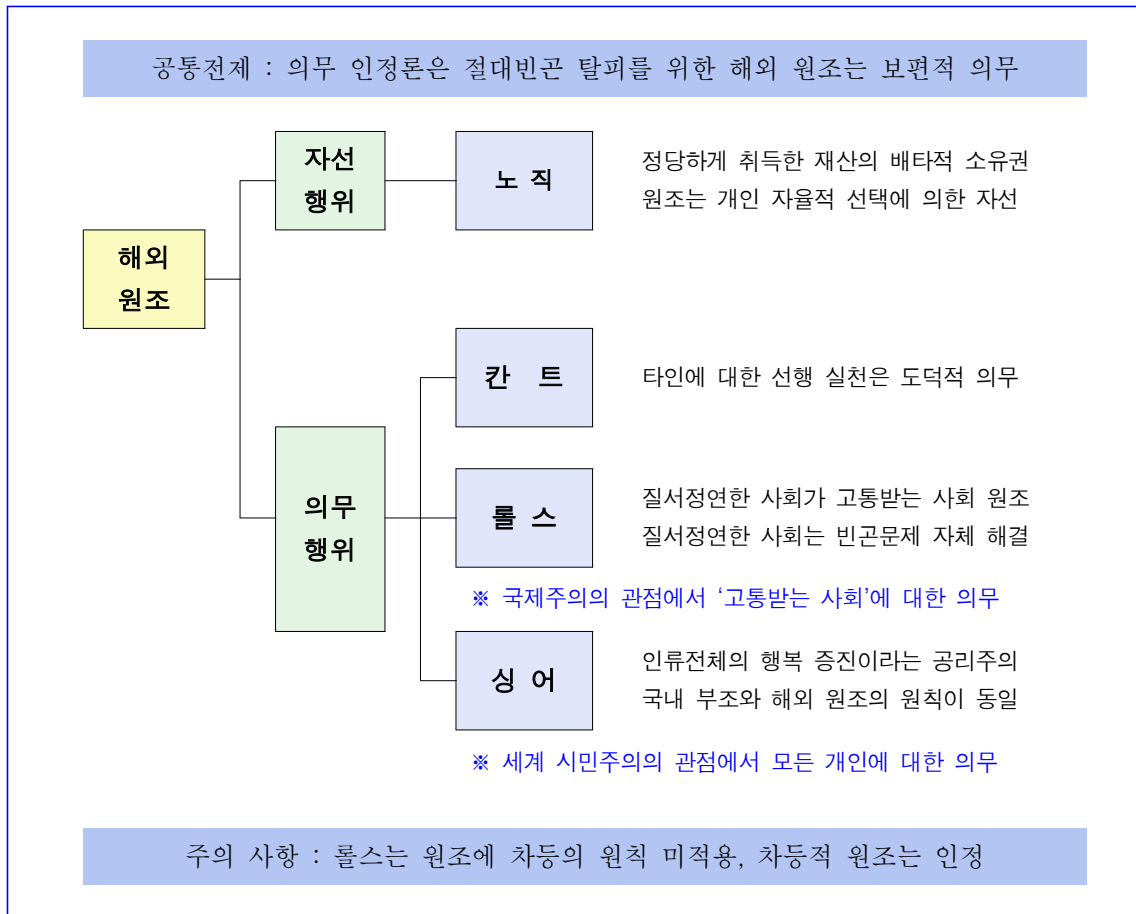
핵심 사상가	정의 전쟁론
--------	--------

[정의 전쟁론]

- ① 아퀴나스의 정의 전쟁의 조건 : 전쟁은 합법적 권위, 정당한 원인, 정당한 의도를 근거로 수행할 수 있음
- ② 왈처의 정의로운 전쟁 이론
 - 1) 타국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의 방어적 전쟁과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당화 가능
 - 2) 전쟁 시작, 전쟁 수행 과정, 전쟁 종식 이후의 세 차원으로 정의로운 전쟁을 구분
 - 3) 전쟁 시작과 전쟁 수행 과정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개전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전쟁 수행의 과정은 정의롭게 이끌어 져야 한다고 주장
 - 4) 대량 학살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를 그 국가 국민이 해결할 수 없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개입이 정당화되며, 전쟁의 수행과 전후의 처리 또한 정의로워야 함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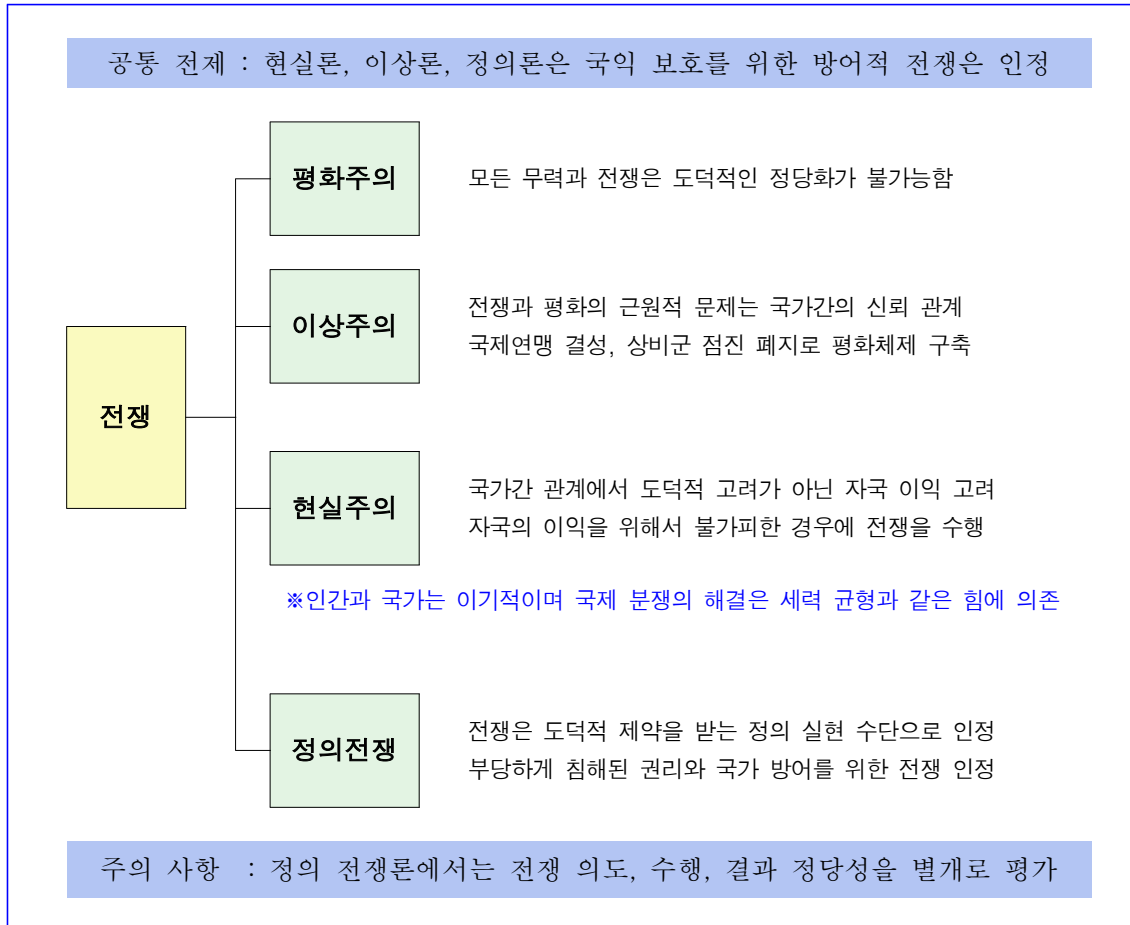


2-1. 해외 원조의 핵심적인 대립구도



2018 학년도	학평 · 모평에서 출제된 고난도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롤스	민주적 질서가 수립되면 부의 차이 극복을 위한 원조는 불필요하다.	○
싱어	원조의 의무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적 의무이다.	○
롤스, 싱어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X,X
롤스, 싱어	전 인류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원조해야 하는가?	X,○
롤스, 싱어	원조는 빈곤한 모든 나라를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X,○

2-2. 전쟁론의 핵심적인 대립구도



2018 학년도	학평 · 모평에서 출제된 고난도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왈처	전쟁 수행 과정의 정당성은 전쟁 동기의 정당성에 의해 결정된다.	X
왈처	전쟁의 동기와 과정이 정의롭더라도 전쟁의 결과가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
아퀴나스, 왈처	전쟁이 국가간 갈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본다.	X, X
갈통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폭력적 수단의 사용은 정당하다.	X
왈처	전쟁이 부당하게 개시되더라도 정당하게 종식될 수 있다.	○

3. 선택지로 변형될 수 있는 읽기 자료

칸트 『영구 평화를 위하여』

첫째, 미래에 전쟁의 계기가 될 소지를 그대로 남겨 놓은 채로 맺어진 어떠한 평화 조약
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제거되지 않은 (O)
도 결코 진정한 평화 조약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국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국민의 공동체 (O)
교환, 매매, 증여로 타국 소유가 될 수 없다. 셋째, 상비군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어
상비군의 즉각적 폐지 (X) - 상비군의 최소화 (X)
다른 국가가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 간 대외 분쟁과 관련하
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
세금으로만 전쟁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정당 (X)
를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다른 국가와 전쟁 중에 있더라도 국가는 장래
의 평화를 위해 서로 불신할 수 있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암살 행위 금지 (O)

(수능완성 119P)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폭력은 직접적·물리적 행위만이 아니라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이며 집합적인 계기, 즉 구조
의 요소 또한 포함한다. 직접적 폭력과 달리 구조적 폭력은 의도와 상관없이 천천히 작동
소극적 평화의 방해 요소 (O)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X)
해 인간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구조에 내장된 폭력을 의미한다. 언어, 예술, 종교, 이념,
인간을 급속히 무너뜨리는 (X)
도덕, 가치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
의 모든 유형을 관통하며 이들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을 은폐한다. 직접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에 의해 정당화 (X)
적 폭력이 '사건'이고 구조적 폭력이 '과정'이라면, 문화적 폭력은 상당 기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불변체로서 직접적·구조적 폭력이 발현하도록 하는 폭력의 기저층으로 작동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X) 폭력의 토대 (O)
다. (수능완성 120P)

인권의 근본적인 박탈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 자신의 견해를 의미 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 행위로 만드는 그런 장소의 박탈로 표현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국적의 박탈 (O)이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속하지 당연한 현상 (O) 않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 선택의 대상 (O)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취급할지가 그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을 때, 자유와 정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시민의 권리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상황이 출현하면서 수백만 명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 국적의 선택권 (O) 국적의 선택권 (O)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수능완성 121P)

4. 주목해야 할 낱선 제시문

알처의 정의 전쟁론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게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불법적으로 강탈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류의 양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는 정당성 상실(O) 심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는 것은 자선이나 박애의 차원을 넘어선 도덕적 의무이다. 이 잔인한 인권 유린의 해결(O)에 따라 정의로운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상황에서의 개입은 인도주의적 개입(O) 단순한 권리의 행사가 아닌 정당한 책임의 이행이다. (수능완성 126P)

현실주의 전쟁론

국제 사회는 본질적으로 무정부 상태이고, 국가 간 관계는 갈등 상황을 전제로 시작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무질서 상태(O) 자발적 협력(X)다. 국가와 국제 관계는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의 균형이다.

(수능완성 127P)

이상주의 전쟁론

국제 사회에서 힘의 균형은 일시적일 뿐이다. 전쟁은 상호 간의 오해나 법과 제도의 불완 합의 균형에 의한 평화는 일시적 평화(O) 전함에 기인하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제 규범의 불완전성을 제거하게 된다면 개별 국 합의 불균형에 기인(X) 국제 규범의 한계를 패권 경쟁으로 해결(X)가들은 국제 규범의 준수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수능완성 127P)

칸트의 영구 평화론

자연은 인간이 만든 사회와 국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지속되는 대립 속에서 평화와 안정의 상태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즉 자연은 사람들이 전쟁과 대립, 그리고 극단적 군비 확장을 통해 무수한 황폐함과 몰락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야만의 무법상태에서 벗어나 전쟁의 참혹함을 겪기 이전에 (X) 전쟁의 상태 (O) 국가들 간의 연맹을 맺어야 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몰고 가는 것이다. 이 세계 정부의 수립 (X)는 당장에는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시민적 공동체의 조정에 의해, 외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O) 공화제 (O)적으로는 공동 협정과 입법을 통해 결국에는 현실화되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우호관계에 입각한 국제법 (O) 영구적인 평화는 실현이 가능 (O) (수능완성 135P)

롤스의 전쟁론

자유적 사회가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쟁은 자국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자국의 입헌 민주 정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부를 획득하거나 자연 방어적 전쟁은 정당 (O)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시민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자국의 합당한 이익에 대립되는 목적 (O) 어떤 사회가 이러한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순간 무법국가가 된다. 인권을 침해하는 무법 국가는 강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능완성 149P)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정당 (O)

롤스의 원조론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
모든 사람 (O) 원조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 (O)

에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원조의 결과 고통을 겪는 사회가 일정한 수준
절대 빈곤 탈피를 위한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 (O) 질서 정연한 사회 (O)

에 이르면, 즉 국제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시

점이 되면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 원조는 기본적으로 이행의 지원에 국한되어야
질서 정연한 빈곤국은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 (O) 정치 체제의 개선 (O)

한다. (수능완성 136P)

싱어의 원조론

만일 우리가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인종에 따라 기회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귀족주의적

인 혹은 중세적인 체제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또한 국적에 따라 기회를 불균등하게 분배하

는 국제 질서에도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
해외 원조는 기회의 불평등 시정에 기여 (O)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에 동일한 원칙 적용 (O)

야 하며, 해외 원조는 어느 국가의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이행되
국경을 초월하여 (O)

어야 한다. (수능완성 136P)

▶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의 동등함을 추구 (X)

보상적 정의론

약소국들은 제국주의적 수탈로 빈곤한 처지에 있다. 약소국들의 빈곤에 책임이 있는 부유
약소국의 빈곤은 자체적 문제 (X)

한 나라들은 약소국에 원조를 해야 한다. (수능완성 142P)

해외 원조는 보상적 책임 이행 (X)

싱어의 원조론

우리는 모든 인간의 권익을 윤리적으로 평등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의 원칙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O)
은 피부색, 성별, 국적 등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인류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치품과 부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 (O)
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양식, 식수, 보금자리, 의료 혜택을
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1달러당 적어도 1센트를 나누어 주
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준수 하지 않
해의 원조는 의무 (O)
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수능완성 146P)

싱어의 원조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원조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잉 소유하고 있
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편향성은 과소비를 해 가면서 아이의 모든 욕구를 들어 주고, 그로 인해 최
빈국의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는 것을 방치하는 데까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익의
해의 원조는 전지구적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실천 (O)
증진과 관련하여 우리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
은 정당화될 수 없다. (수능완성 152P)



롤스의 원조론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에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국가들 간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평등,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로운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수능완성 152P)

빈곤 문제의 주된 원인은 정치체제의 결함 (O)



5. 주의해서 읽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

사상가	선택지	정오
롤스	정치적 전통과 물질적 자원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원조해야 한다.	○
롤스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X
롤스	해외 원조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 다양성과 관용을 해칠 수 있다.	○
롤스	전 세계의 빈곤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원조의무가 성립한다.	X
롤스	인권 보호와 기본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목표가 원조의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
롤스	국제 원조는 기본적으로 질서 있는 사회로의 이행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
롤스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통합시켜야 한다.	○
싱어	원조를 받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원조해야 한다.	○
싱어	원조는 기회가 국적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싱어	해외 원조의 의무는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된다.	○
싱어	해외 원조는 전 지구의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해 실천되어야 한다.	○
싱어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의 도덕적 의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X
싱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싱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원조를 늘릴 필요가 있다.	○
왈찌	전쟁은 평화적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왈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전쟁에서는 도덕적 제약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X
왈찌	전쟁의 시작과 진행 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	○
칸트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칭찬할 만한 것이다.	○
칸트	전쟁 중에 있을 때에는 서로 불신할 수 있는 적대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X
칸트	전쟁은 상호간의 오해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불완전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X



6. 해외 원조와 전쟁의 읽기 자료

▣ 해외 원조와 전쟁의 고난도 문제 정복 핵심 체크

- ① 공통 전제 : 원조 의무 인정론은 절대빈곤 탈피를 위한 원조가 보편적 의무
- ② 쟁점 사항 : 원조 목적과 단위,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원칙, 전쟁의 정당성
- ③ 주의 사항 :
 - 1) 롤스는 사회, 싱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원조를 더 중시
 - 2) 롤스는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의 원칙 구분, 싱어는 동일 원칙
 - 3) 정의 전쟁론에서는 전쟁 의도, 과정, 결과의 정당성 구분 평가
 - 4) 영구 평화론에서 국제적 연맹은 세계 정부가 아니라 국제 기구

▣ 공통 전제 : 의무론은 절대빈곤 탈피를 위한 원조가 보편적 의무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의무론의 입장인 롤스와 싱어는 절대빈곤 탈피를 위한 원조가 보편적 의무라고 인정한다. 2017학년도 9월 모평 이전까지는 해외 원조가 의무라는 점만 출제되었다. 그런데 9월 모평에서 처음으로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이라는 원조의 목표가 추가되었으며, 의무 앞에도 ‘보편적’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이 낮은 선택지가 학생들에게 불러온 혼돈은 그 파장이 매우 컸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싱어는 인정하지만 롤스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 서술 내용이 롤스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착각한 근거는 2가지이다. 첫 번째로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 해결’이 원조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로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롤스는 ‘정치적 전통과 물질적 자원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빈곤 문제 해결에서 사회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절대 빈곤에 놓여 있는 주된 이유를 정치 체제의 비민주성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 절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즉 원조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절대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만을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때문에 보편적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 ‘고통받는 사회’라는 특수한 대상에 게만 원조의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보편적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 의무라는 것은 대상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관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의무라고 했을 때 그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롤스에 따르면 보편적 의무의 주체는 모든 사람, 국가인 것이며 보편적 의무의 대상은 ‘죽어가는 사람’에 해당하는 고통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 주의 사항 : 1) 롤스는 사회, 싱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원조를 중시

롤스와 싱어가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라는 것이다. 이 전제를 확장하면 자국민에 대한 부조와 해외 원조가 모두 보편적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다. 즉 두 사람 모두 해외 원조보다 국내 부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또 2명 모두 전 국가, 전 인류의 복지를 균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모든 국가의 부의 수준을 균등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롤스의 입장은 국가별 복지 수준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리주의자인 싱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개인별 부와 복지의 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해외 원조의 목적과 단위에서 대립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 싱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원조의 단위에서도 롤스는 국가 또는 사회 단위의 원조를 중시한다. 따라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은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싱어는 개인 단위로 적용하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기반으로 원조의 대상자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구촌의 모든 빈곤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원조의 대상을 개인 단위로 파악하는 싱어는 예라고 대답하겠지만 롤스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그 사회 자체적으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빈곤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도움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균등하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 절대 빈곤에서 탈피한 사람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각 국가별 부의 차이, 복지 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복지 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될 수 없다.

■ 주의 사항 : 2) 롤스는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의 원칙 구분, 싱어는 동일 원칙

롤스와 싱어의 입장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의 원칙이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지향하는 차등의 원칙을 국내 부조에는 적용하지만 해외 원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에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 반면에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선택지로 출제되기도 한다.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 서술에 대해서 롤스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내 부조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싱어는 이 서술에 동의할 것이다. 그는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모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은 잘 기억해야 한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에 해당하며 그들은 행위의 동기보다 행위의 결과를 더 중시한다. 그래서 싱어는 원조의 결과가 실질적인 공리의 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이 서술에 대해서 싱어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가 공리의 증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주의 사항 : 3) 정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의 의도, 과정, 결과의 정당성 구분

전쟁론이 최근에 핵심 단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된 대립적 입장은 평화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정의 전쟁론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평화주의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무력의 사용을 부정하는 시각이며, 이상주의는 국가간 신뢰와 협력,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국제법과 국제 기구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관계에는 도덕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의 전쟁론은 도덕적 정당성만을 갖는 전쟁을 인정한다.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는 정의 전쟁론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정의 전쟁론과 관련해서는 전쟁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전쟁의 수행 과정과 전쟁의 결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전쟁의 수행과 결과에서의 정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쟁의 의도, 과정, 결과의 정당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은 도덕적 제약을 받지만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퀴나스는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전쟁은 합법적 권위, 정당한 원인, 정당한 의도를 근거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알짜는 대량 학살과 같은 비인도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간주한다. 또한 전쟁의 동기와 과정이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결과가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쟁의 동기, 과정, 결과의 정당성을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주의 사항 : 4) 영구 평화론에서 국제적 연맹은 세계 정부가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의 대립, 갈등, 반목 상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칸트이다. 그에 따르면 평화는 도덕적인 법칙을 규정하는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간 신뢰를 정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적 연맹의 창설을 제안한 했다. 이 국제적 연맹은 국내적으로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공화제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 우호 관계에 따라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평화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연맹 체제는 각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는 독자적인 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일부의 학생들은 현재의 UN을 세계 정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제 기구의 설립이라는 표현과 세계 정부의 수립이라는 표현이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UN은 국가들간의 연합체의 국제기구일 뿐이며 조세 징수권, 처벌권 등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정부는 아니다. 따라서 칸트가 말한 국제기구는 세계 정부가 아니다. 이 국제 기구는 국제법인 세계 시민법을 통해서 보편적인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